

의 안
번 호

737

【울산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 제출자 : 2009. 11. 11(수) · 중구청장
-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09. 11. 16(월)
-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09. 11. 30(월)

2. 제안이유

- 가.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으로 행정안전부의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2009. 10. 5)됨에 따라
- 나. 이에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 감면 범위 명확화 (안 제3조, 제14조, 제17조)
- 나.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 명확화(안 제5조)
 - ⇒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 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제도 폐지
 - (안 제5조의2)
 - ⇒ 지방세법으로 이관
- 라.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비 (안 제19조)
- 마.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사치성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안 제23조)
- 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 정비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 가. 입법예고 결과 : 의견없음(2009. 10. 19. ~ 11. 9)
- 나. 감면조례 표준안의 시달 근거
 - 지방세법 제9조에 근거, 행안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
- ※ 지방세법 제9조 :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감면조례를 개정

6. 검토의견

-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행정안전부의 「구 세 감면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 나. 이에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됨.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u>제9조의 규정에 따라</u> 울산광역시중구 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제9조에 따라</u>----- ----- ----- ----- ----- ----- -----.</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u><삭 제></u>----- ----- -----.</p>
<p>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취득·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택(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3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 -----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 ----- -----.</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p>	<p>제4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u>제32조에 따라</u>----- -----</p>

현 행	개 정 안
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 ----- -----.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제31조에 따른 ----- -----설치 · 운영----- ----- ----- -----.
제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1. 주택소유자(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연간 종합소득이 1,200만원 이하일 것 2.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것	<삭 제>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 -----

현 행	개 정 안
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
1. (생략)	
<u>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u>	
<u>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u>	1. (현행과 같음)
<u>3. 국토해양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u>	<삭 제>
<u>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u>	<삭 제>
<u>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u>	<삭 제>
<u>6. 「도서관법」 제31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도서관</u>	2.----- 제16조에 따라 ----- -----
<u>7. 「과학관육성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u>	3. ----- 제40조에 따라 ----- 4. ----- 제6조에 따라 -----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따른----- ----- -----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1. 「문화재보호법」 제5조, <u>제7조부터 제9조와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u>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p> <p>2. (생략)</p> <p>3. 「문화재보호법」 및 <u>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의하여</u>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p> <p>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 제1항에 <u>의하여</u>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p> <p>제8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u>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과 「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u></p> <p>2. (현행과 같음)</p> <p>3.-----<u>「울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u></p> <p>-----</p> <p>②----- 따라----- -----.</p>
<p>제8조의2(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p> <p>①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4.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p> <p><u>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토지</u></p>	<p>제9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p> <p>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p> <p>1. 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2. 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p>3. 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p>

현 행	개 정 안
<p><u>의한</u>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의무 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u>제2호의 규정에 의한</u>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u>당해</u>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u>당해</u>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u>당해</u>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 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u>제10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u></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u>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u>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u>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u>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 부분과 「철도안전법」 <u>제45조의 규정</u></p>	<p>-----</p> <p>-----</p> <p>----- <u>제13조제2항에 따른</u></p> <p>-----</p> <p>-----</p> <p>-----.</p> <p>1.-----</p> <p>----- <u>제2호에</u></p> <p>따라-----</p> <p>----- <u>해당</u>-----</p> <p>-----</p> <p>-----</p> <p>-----.</p> <p>2.-----</p> <p>----- <u>해당</u>-----</p> <p>-----</p> <p>-----</p> <p>-----.</p> <p>3.-----</p> <p>----- <u>해당</u>-----</p> <p>-----</p> <p>-----</p> <p>-----.</p>
	<u>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u>
	①-----
	----- <u>제2조제13호에 따른</u>

현 행	개 정 안
<p><u>에 의하여</u>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계획시설로써 같은법 제32조 규정에 <u>의하여</u>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주택(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p> <p><u>제11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u></p> <p>「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u>의하여</u>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 대상 지역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그 부속 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p>	<p>-----<u>제32조에 따른</u>----- ----- ----- <u>제45조에 따라</u>----- ----- -----. ②----- -----<u>제2조제7호에 따른</u>----- -----<u>제32조에 따라</u>----- ----- ----- -----.<u><삭 제></u></p> <p><u><삭 제></u></p>

현 행	개 정 안
<p>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u>당해</u>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u>사업용</u>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 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u>당해</u>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 세는 「지방세법」 <u>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 <u>제28조의5에 따라</u> ----- ----- <u>해당</u> ----- <u>아파트형 공장용</u> ----- ----- ----- <u>해당</u> ----- ----- ----- <u>제182조제1항에 따라</u> ----- -----.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p>「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u>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u>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u>주택</u>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u>의하여</u> 재산세를 경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장정비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u>당해</u>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 인서 교부일 이후 <u>당해</u>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 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p> ----- ----- <u>제37조에 따라</u> ----- -----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u> -----. 1.----- ----- <u>해당</u> ----- -----. 2.-----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신용정보사업에 대한 감면) <p>「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u>의하여</u> 설립된 울산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법 <u>제17조의 규정에 의한</u>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u>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울산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 ----- <u>해당</u> ----- ----- -----.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p>「지역균형개발 및 지방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u>의하여</u> 설립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u>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u>)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 ----- <u>따라</u> ----- ----- ----- <u>제17조에 따라</u> ----- -----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 ----- ----- ----- -----.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한 감면) <p>「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u>의한</u>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u>의하여</u>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u>당해</u> 지</p>	----- ----- ----- ----- 제16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 제63조에 따라 ----- ----- ----- <삭 제> ----- ----- ----- ----- -----.
	제17조(농어촌주택개량사업 등에 대한

현 행	개 정 안
<p>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주택</u>(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u><신 설></u></p>	<p>감면) ①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 취득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 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서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u>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u>(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p>

현 행	개 정 안
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u>제3호에 따른</u> ----- <u>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u> ----- ----- ----- ----- ----- -----.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3호 가목 및 <u>나목의 규정에 의한</u>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u>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3.----- ----- <u>나목에 따른</u> ----- <u>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u> ----- ----- ----- -----.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 12항제4호 나목 및 <u>다목의 규정에 의한</u>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u>동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u>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 <u>다목에 따른</u> ----- <u>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u> ----- ----- ----- -----.
<u>제2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u> 「부가가치세법」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u>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법시 행령 <u>제8조의 규정에 의한</u> 고유번호	<u>제19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u> ----- <u>제5조에 따라</u> ----- ----- ----- <u>해당</u>

